

#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 안내

구분	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기준	서류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
공통서류일반 (기관추천)	○		① 신분증	본인	·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
	○		② 주민등록표등본	본인	·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 관계 포함하여 발급
	○		③ 주민등록표초본	본인	·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사항·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
	○		④ 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본인	·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. (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도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대리 신청은 불가) (용도: 주택공급신청용)
	○		⑤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·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
	○		⑥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	본인	·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,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
		○	⑦ 주민등록표등본	배우자	·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(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바람)
		○	⑧ 복무확인서	본인	· 수도권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기타지역(수도권)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- 군복무기관(10년 이상)을 명시

※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, 상기 구비서류가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현장 청약 접수가 가능함.

※ 대리인 신청시 청약신청자의 인감증명서 1부, 인감도장,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서류로 필요하며, 위임장(견본주택 비치)작성시 접수가 가능함.

※ 주민등록표등·초본 발급시 '세대주 성명 및 관계'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,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'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'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.

※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기록 대조일은 반드시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발급 받으시기 바람.

※ 기타 기재되지 않는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